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선갑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제안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- 본 일부개정규칙안은
복잡다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
현대 행정의 특성상,
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
의회에 제출된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기에
시간적으로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바,

그 제출 시기를 회기시작 20일 전까지로 하여 심도 있는

검토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
제안됐습니다.

-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
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
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